

재량권과 우리의 할 일

Discretionary Power and Our Responsibility

장양순 / 본협회 편찬위원장, 동명건축

by Chang Yang-Soon

지난달 MBC의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에서 '건축사의 도전' 이란 방송보도를 본 건축사라면 누구나 회제의 주인공인 리인철 건축사의 용기있는 행동에 찬사와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리인철 건축사는 충남 아산시에서 10년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이다. 그는 아산시에 제출했던 건축허가 2건이 부당하게 불허되자 이를 감사원에 진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를 충남도에 위임했고 충남도는 적당히 얼버무림으로써 이 부당한 조치를 더 이상 호소할 길이 없게 되자 지난 1월 21일자 한겨례신문 1면 광고를 통해 대통령께 공개적인 직소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시사매거진 제작팀이 이를 심층 취재하기에 이르렀고 2월 첫주 「건축사의 도전」이란 제목으로 방영하게 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필자는 물론이고 협회에도 각지의 건축사들로부터 “대단히 통쾌하다”, “격려해 주라”, “협회 차원에서 지원하라”는 등 동감을 표시하는 전화가 쇄도했다.

신문광고 내용은 2건의 허가를 불허한 사유를 들고 이의 부당성을 법리로써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으며 ‘기재는 계편이고 관은 관편’이 된 상급기관에 대해 엄중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나 상세히 알고 하는 분은 PC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우리들이 당면하는 사안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신문광고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다만 우리는 리인철 건축사가 광고문의 서두에서 밝힌 자유재량권과 저간의 건축사계 인허업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자유재량(自由裁量)이란 일반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짜임틀의 범위안에서 독립된 판단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입법재량, 사법재량, 행정재량이 있는 바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행정재량이다.

행정재량은 법의 구속을 받는 기속행위와 받지 않는 재량행위로 나뉘어지고 재량행위는 다시 사법심사를 받는 법

규재량 행위와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 자유재량 행위로 세분할 수 있다. 후자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지 초법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다시 말하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재량권 한계의 일탈) 법의 취지(평등원칙·비례원칙 등)에 어긋나게 행사하면(재량권 남용) 위법이 되는 것이다.

우리 건축사들중 적지않은 수가 리인철 건축사의 경우와 같이 자유재량이라는 미명하에 재량권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법 내지 편법적 부당함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정작 자유재량권을 행사해야 할 상황에서는 법률을 경직되게 적용함으로써 혀탈감과 무력감에 빠져야 했던 경험들이 있다. 탄원 광고문과 같이 부당함을 법리에 의거하여 따지고 들면 “억울하면 행정심판을 하라”는 말을 꽤나 듣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를 당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 했는가? 행정소송하면 몇 년이 걸리고 이겨 본들 그 사이에 경제적 손실이 더 크니 허가청의 의견이나 요구를 따를 것을 건축주에게 권하며 타협 아닌 타협을 유도하고 씁쓸한 웃음을 짓지 않았던가.

한국이 IMF시대를 맞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인허가 업무의 복잡성과 어려움에 있다고 한다. WTO시대에는 어느 나라 자본을 막론하고 이를 최대한 자국(自國)에 끌어들여 고용창출에 힘써야 하는데 한국에 투자하려 온 기업인들은 공장허가 내려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는 왕정시대의 관존민비사상과 일제시대 식민지 수탈행정의 전통과 사상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가능한 한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 방향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민본·민주주의와 국제관례가 뿌리내리지 못한 사유다. 그렇기에 행정에 자유재량이 인정되는 이유가, 입법자가 장래의 모든 사태에 대응할 상세하고도 합리적인 규정을 두기 어렵고 개개의 사정에 맞는 유연하고도 합리적인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인데도, 우리는 유연 대신 경직, 합리 대신 불합리한 경우를 많이 당해 왔다.

이런 사연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방송머리에 “건축사라면 시나 건축과를 상전으로 모시는 것으로 알려졌던 터라…”란 멘트를 시작으로 「건축사의 도전」이란 타이틀을 내걸었던 취재기자 및 PD를 통해서 일반인도 공통되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우리에게 설계를 의뢰하는 건축주들은 언제부터인가 허가를 빨리 내는 건축사를 유능한 건축사로 여기게 되었으며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려는 건축주의 요구에 순응하는 건축사를 높이 평가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건축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 있는 이러한 부조리와 불합리들은 근본적으로 타락 탈법을 초래하게 되었다.

법규정에만 맞으면 건축할 수 있게 미관심의도 없애는 마당에 규정에 맞게 신청한 노인 휴양시설이 「콘도」로 변신할까봐 허가를 불허한다면 어불성설이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미리 법을 바꾸든가 아니면 추후 관리를 잘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는 있다. 호구지책일지라도 일부는 위에 언급한 대로 법은 맞더라도 양심에 어긋나는 경우를 만들기도 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건축사의 공개 고발에 이어 아산시의 해명서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박문이 신문지상을 통해 계속됐으며 그는 현재 검찰에 아산시를 고발한 상태다. 행정부에서 해결이 안됨에 따라 사법부에 심판을 의뢰한 것이다. 결과야 조만간 들어 나겠지만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는 관의 재량권에 대해 이번 기회에 좀 더 확실히 해두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용기있는 회원들이 계속 나와야 할 것이며 이런 판례들이 모아져 허가업무에 있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체계화하려면 협회가 주축이 되어 재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승소시 격려금을 지급하고 협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재판부에 문서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회원 또한 독불장군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협회와 논의하여 좀 더 완벽한 준비로 싸워야 할 것이다.

WTO의 출범, 협회가입 자유화 등 내외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우리는 일부 회원들의 협회 무용론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힘없는 얼룩말들 조차 위기에 처하면 무리지어 머리를 맞대고 맹수의 공격을 막아내지 않는가

작품하는 우리는 어차피 개성이 누구보다 강하다. 멀리서 백사장을 보면 뭉쳐있는 것 같아도 들어 뿌리면 날개가 되어 버리는 모래와 같이 우리는 칠기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협회가 시멘트 풀이 되어 결속해야 한다.

힘이 따르지 않는 정의가 무용지물이 됨을 3.1운동의 역사에서 배운 바 있다.

98년의 수주실적은 97년 대비 60%나 줄었다. 금년이라고 더 좋을 것 같지도 않다.

어려운 때 일수록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자.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다 보면 참 좋은 세상이 오지 않겠는가.